

위험성 평가, 이렇게 하세요!



Who When

- ☑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**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**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!

- ☑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**“최초평가”**, 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**“수시평가”**,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**“정기평가”**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

* 상시평가(월-주-일) 활용 가능

Where What

- ☑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

- ☑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·화학물질·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,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**유해위험요인** 빠짐없이 찾기!



How

- ☑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**빈도·강도법**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**3단계판단법, 핵심요인기술법, 체크리스트법** 등도 제시!

Why

- ☑ 근로자,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**안전일터를 조성**하기 위함!



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!

현 행

☑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

- ‘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’으로 제한적

☑ 정의규정

- ‘위험성평가’ 정의에 빈도·강도를 추정·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

☑ 평가방법

-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를 행렬·곱셈·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

☑ 평가시기

- 최초·정기·수시평가로 구성
- * [최초평가]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
- [정기평가]최초 평가 후 1년마다
- [수시평가]기계·기구 등의 신규 도입·변경



☑ 근로자 참여 제한

-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,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감소대책 수립,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

☑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

-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

개 정

☑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

- ‘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’으로 구체화

☑ 정의규정 명확화

- 부상·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,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

☑ 평가방법 다양화

- 빈도·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
- 3단계판단법, 핵심요인기술법,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

☑ 평가시기 명확화

-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
- 최초평가**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
- 수시평가** 기계·기구 등의 신규 도입·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

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,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

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, 아차사고 확인,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·정기평가 면제

☑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

- 위험성평가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

☑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

-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
-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